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설명자료

Q & A

Q1 경영책임자등이 의미하는 것은?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법 제2조제9호가목)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을 의미함
 -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경영책임자임
 -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①직무 ②책임과 권한 ③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복수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임
 -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 기업이 여러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한편,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님
 -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 실질적으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될 것임

Q2**'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란?**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특히,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됨
-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 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가 적용될 것임

Q3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이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 법 위반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중대 산업재해인지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함

○ 사고성 재해처럼 특정 질병 유발 요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하는 등 인과관계가 명확할 필요

* 중대산업재해 중 하나인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든 것도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

□ 또한,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될 경우 기저질환 있는 고령층, 가족력 보유자 등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처벌과 연계되는 만큼 자칫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부상 및 중대시민재해의 질병 관련 규정과 규정방식이 상이하고, 법률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급성중독을 예시하여 위임한 취지도 고려하여야 함

○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직업성 질병을 다 포괄하라는 의미로 질병의 범위가 위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 사고성 재해 방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점도 고려함

*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

직업성 질병에 대한 설명

해당 호	질병 명칭	설 명
1~13	급성중독	유해인자가 짧은 기간 내에 생체에 작용하여 급작스럽게 질병 상태(심혈관증상, 호흡기증상, 신경학적 증상, 자극증상 등)에 빠지는 현상
14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기존에 호흡기 질환이 없던 사람이 급성으로 호흡기 자극 물질에 노출된 후 지속적으로 기침, 호흡곤란 등과 같은 기도과민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
15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피부의 박탈을 초래하는 전신성의 급성 피부 점막 전신 질환
16	독성 간염(급성)	간에 해로운 독성 유해인자에 의해 급격한 간세포 손상
17	B형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간 염증, 간세포 손상 질환
	C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간 염증, 간세포 손상 질환
	매독	스피로헤타(spirochete)과에 속하는 트레포네마팔리둠군(Treponema pallidum)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 deficiency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
18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균(Leptospira species)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고열, 폐출혈 뇌막염, 간·신장 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급성 열성 전신성 질환
19	탄저	탄저균(Bacillus anthracis)의 포자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성 질환
	단독(erysipelas)	연쇄상 구균에 감염되어 피하조직과 피부에 병변(피부 발진 등)이 나타나는 급성 접촉성 전염 질환
	브루셀라증	브루셀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20	레지오넬라증	물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
21	압착증	압력에 의해 신체의 조직, 혈관, 신경 등이 손상을 입는 증상
	중추신경계 산소중독	고도의 분압에서 산소를 장기간 들이켜서 나타나는 의식상실, 경련 등의 증상
	감압병(잠수병)	고압에서 체내에 과다 용해되었던 불활성 기체가 주위 압력이 낮아지면서 과포화 상태로 되어 혈액과 조직 내에 기포를 형성하여 혈액 순환을 방해하거나 주위 조직에 손상을 주는 증상
	공기색전증	혈관으로 들어간 공기가 압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공기방울이 되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차단하는 증상
22	산소결핍증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에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호흡곤란, 현기증, 의식상실, 심정지 등의 증상
23	급성 방사선증	단기간에 과다하게 방사선량에 피폭되었을 때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소화기관, 피부, 골수, 갑상선 등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
	무형성 빈혈	골수 안에서 모든 세포의 모체가 되는 줄기세포를 생성하지 못하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가 감소하는 빈혈
24	열사병	체온조절중추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고온 장소에 장시간 있어 체온조절중추의 기능이 상실되어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섬망, 의식상실, 경련·발작과 같은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를 야기하는 질환

Q4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그 자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 조치의무를 규정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를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할 관리상 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임
- 또한 관리상 조치 의무의 내용은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미이행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를 포함

Q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안전보건 전문인력 외에도 위험작업에 대하여 2인1조 배치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령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은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 ▲ 안전 및 보건 목표설정 ▲ 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절차 마련
▲ 안전 및 보건 예산 및 인력 확보 ▲ 종사자의 의견청취
▲ 위기대응 절차 등의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임
- 위험작업 2인 1조 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개별 관계 법령에 안전 및 보건조치의 하나로 세세한 기준으로 우선 규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 위험작업 2인1조는 2019.3.19.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들어간 내용으로 법상 의무는 아님
 - ↳ 제14조(안전조치)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Q6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와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 법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것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았다고 해석됨
- 관계 법령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이 해당되는 것으로
- 법률의 목적과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원법」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임

Q7

건설업의 경우 시공순위 상위 200위 내 기업에 안전보건조직을 두도록 규정한 이유는?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과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단, 위험도가 낮아 안전관리자 등이 2명 이하인 경우는 예외)

□ 연간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건설업 시공 능력 순위별 상시 근로자수를 추정한 결과 **200위 이내에서 상시근로자수 500명과 유사**

* 상시근로자수 = (연간 공사실적액 X 노무비율(27%))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

** 상시근로자수(추정) 결과 · 1위~100위 기업 평균 **약 5,444명** · 101위~200위 기업 평균 **약 1,193명** · 201위~300위 기업 평균 **약 318명** · 301위~1000위 기업 평균 **약 121명**

*** 참고로 151위~200위 기업 평균 상시근로자수(추정) **약 481명**으로 500명과 유사

○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하기에 앞서 산업재해 발생비율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함

* '20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8명으로 전체의 51.9%

-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직을 의무적으로 두게 할 필요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고 할 것임